



동작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

1. 부구청장 방침 제101호(2015.08.13.)와 관련입니다.
2.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대 상 :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고기간 : 2015. 8. 20. ~ 2015. 9. 9.

다. 방 법 : 구 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붙 임 : 입법예고문(안) 1부, 끝.

주무관	김소영	장애인지원팀장	이재윤	사회복지과장	김은희	주민생활복지국 전결 08/17 장 오영수
협조자	주무관	김경문	규제개혁팀장	강성문		
시행	사회복지과-107083	() 접수	()	
우	06928	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)	/	www.dongjak.go.kr		
전화	02-820-9712	/전송	02-820-9989	/		/ 대시민공개